육아정책 소식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보도자료에서 학부모 단체, 보육교사 단체,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1천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린이집 부채비율 50% 초과 금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맞벌이 부모 우선 입소 등이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5월말 중 규제개선 확정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해 보도하였다. 이번 개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을 확대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하여 보육의 질 개선도 추진하고자 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셋째,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규정 적용 확대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이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재무 · 회계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25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상기 제정(안)을 통해 첫째,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원아들의 교실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하고 그 금액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셋째,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책무성 확보 방안을 강화를 위해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지출증빙서류를 명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부모 및 교직원 참여 증대를 통해 '12년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예산은 학부모 공개 의무화,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향후 교과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